

## <국가배상소송 개요>

### 1. 당사자

- 원고: 유가족 4인(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 2. 이 사건의 경위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였던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진단을 받은 고령의 기저질환자였음.
- 2020. 12. 25.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기침, 근육통, 오한, 두통 등을 겪었으나 외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지 못함.
- 망인은 2021. 1. 4. 후각을 상실하고, 다음날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2021. 1. 6. 23:00경 호흡곤란 증세까지 호소하였으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2021. 1. 7. 06:10경 생활치료센터 근무자가 망인의 의식, 호흡,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여 06:24에 119 신고하였으나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양성판정일인 2020. 12. 25.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21. 1. 5.경에서야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망인의 시신에 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일방적인 화장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함.

### 3.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

#### 가. 의료조치 소홀 등 보호의무 위반

- 피고는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집행법 제30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등에 따라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외부의료시설의 진료와 적절한 진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짐

-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인 수용자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 1)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부재

- 망인의 사망일인 2021. 1. 6. 이전까지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방역지침의 내용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형 집행정지 건의 후 지자체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의료기관 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지침만 존재함.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망인과 같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응 지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위반함.

### 2) 형집행정지 및 연계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부재

- 형사소송법 및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에 의하면, 수용자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형집행정지 건의 후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망인은 확진 후 5일 후이나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태가 되어서야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 및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함.

### 3) 신속한 의료조치 부재

- 피고 기관 내 의료진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망인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증상을 확인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망인이 2021. 1. 6. 23:00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을 때로부터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최초의 응급조치가 시행되어, 망인은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 및 형집행법 등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함.

#### 나. 과밀수용 방치

-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에 따라 국가는 과밀수용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
- 망인이 수용되었던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률이 116.6%에 달하여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였고, 이러한 심각한 과밀수용을 방치하여 중증 환자에 대한 적재적소의 관리 및 응급조치의 부재로 망인이 사망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 형집행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법령을 위반함.

#### 다. 감염사실 고지 의무 위반

-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헌법, 형집행법 및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라 생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인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가족에게 반드시 신속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망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날인 2020. 12. 25.로부터 무려 12일이 지난 2021. 1. 5.에서야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고지하여 원고들의 수용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접근하

고 제공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 및 형집행법, 수용자 인권 지침에 따른 수용자 가족에 대한 건강상태 고지 의무를 위반함.

#### **라. 망인의 시신처리에 관한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 침해**

-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자신이 결정한 장례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권리임.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된 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시신에 대한 장례를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화장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헌법과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함.

#### **마. 진상은폐행위로 원고들의 신원권 침해**

-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인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신원권).<sup>1)</sup>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경위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신고가 지체없이 이루어졌다는 등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신원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는 헌법 및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함.

#### **4. 침해된 권리**

- 생명권, 수용자의 중요한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제공받을 권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할 권리, 신원권 등

1)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89나50586 판결 참조

## 5.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들은 30,000,100원을 일부청구

## 6. 사건의 의의

-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당국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명확히 인정한 사건임.
-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방치, 유족의 알권리 침해, 일방적 화장강요, 진상은폐행위 등 구조적·복합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유족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고, 이에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사건임.
- 이 소송으로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내 수용시설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함.